

## 2024년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비상임 임원(이사/감사) 모집 공고

재단법인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  
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년 05월 31일

[www.bfic.kr](http://www.bfic.kr)

(재)부산글로벌도시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

### 1. 임용직위 및 인원

구분	직 위	채용인원	주요업무
비상임이사	이사	4명	부산글로벌도시재단 이사
비상임감사	감사	1명	부산글로벌도시재단 감사

### 2. 지원자격

구 분	내 용
자격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</li><li>○ 「부산글로벌도시재단 정관」 제6조의 '임원의 결격사유'에 해당하지 않는 자</li><li>○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</li></ul>
결격사유	<p>[공통]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&lt;개정 2019. 12. 3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미성년자</li><li>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li><li>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<li>4.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</ol> <p>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</p>
결격사유	<p>[공통] 재단 정관 제6조 제6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미성년자</li><li>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</li><li>3.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</li><li>4. 법령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</li><li>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</li><li>6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li><li>7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</li></ol>

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지 지나지 아니한 사람
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10. 방송법 제13조 3항에 해당되는 자(대표이사에 한함) <개정 2023. 06. 27.>

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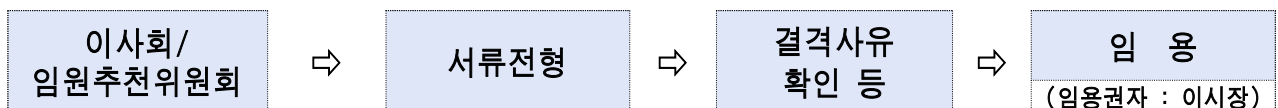
### 3. 임기 및 보수

- 임 기 :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 (1년 단위 연임 가능)
- 보수 및 기타 복리후생 : 무보수

### 4. 주요 직무내용

-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임원 직무수행 요건 참조

### 5. 임용절차 및 전형방법 등



- 각 세부전형 및 심사방법 등
  - ① 서류전형 :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실시
  - ② 결격사유 조회 : 지방출자출연기관법 제10조, 재단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조회 진행
  - ③ 최종임용 : 2024. 6월 중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

## 6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1	응시원서	서식 1호
2	이력서	서식 2호
3	자기소개서	서식 3호 (3매 이내 작성)
4	직무수행계획서	서식 4호 (5매 이내 작성)
5	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	서식 5호
8	경력증명서 사본	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
7	학력(학위)증명서 사본	외국학위일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등록필증 및 번역본 제출
8	관련 자격증 사본	해당자에 한함
9	추천서	해당자에 한함
10	주민등록 초본 및 기본증명서	병역사항 및 결격사유 조회용으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

## 7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부산광역시 및 (재)부산글로벌도시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

-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: <http://www.busan.go.kr> ▶ 부산소식 → 공고 → 채용공고
- (재)부산글로벌도시재단 홈페이지 : <http://www.bfic.kr> ▶ 공지사항

나. 공고 및 접수기간 : **2024. 05. 31. ~ 06. 11. (11일간)**

다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※접수마감일 18:00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

- 우편 :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13층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채용담당자 앞
- 이메일접수

▶ 제출처 : [admin@bfic.kr](mailto:admin@bfic.kr)

▶ 파일명 : 성명\_제출일자 ※예시 : 홍길동\_20210214.zip (압축파일)

## 8. 유의사항

가. 본 채용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임원 채용으로 일반 직원채용에 한 해 시행되는 블라인드 채용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
나. 경력, 자격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
다. 응모자 수가 모집예정인원 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임명권자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재공고 합니다.

- 라.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과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, 구비서류 미비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마. 합격자는 전화로 통지하며,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.
- 바. 기타사항은 (재)부산글로벌도시재단 임원추천위원회(경영전략팀, 051-711-681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4. 05. 31.

**(재)부산글로벌도시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**

## 임원채용 자격 기준

구 분	내 용
대표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공외교정책 및 영어방송 분야 발전방안 및 정책개발의 전문지식과 이해가 풍부한 자</li> <li>·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</li> <li>· 경영전반의 혁신과 마케팅 강화 등 창조적 관리·경영능력을 보유한 자</li> <li>·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</li> </ul>
선임직 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공외교 발전 및 방송분야의 정책개발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가 풍부한 자</li> <li>·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li> <li>·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</li> </ul>
선임직 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li> <li>· 법률과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공기관 감사직무 수행에 대한 경험을 겸비한 자</li> <li>·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</li> </ul>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(임원의 결격 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</li> </ul>